

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국민의
나라
대한민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5387(2020.12.31)호 관련입니다.

2. 감염병 해외 유입 최소화를 위한 조치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각 항공사에서는 승객에 대하여 사전 안내 등 항공기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래-

가. 조치 내용 :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(미제출자 및 PCR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시 입국 불허)

※ 영국,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한 경우 내국인 포함 모든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

-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국문·영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 (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 인증문, 번역확인 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시에도 인정)

※ 기존 방역강화국가에 대한 기 조치사항 및 카자흐스탄발 외국인 탑승객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지침은 별도 안내시 까지 유효 (다만,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로 일원화)

- 필리핀, 우즈베키스탄, 키르기즈공화국, 방글라데시, 네팔 출발 외국인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

나. 시행 시기 : 한국시간 2021.1.8. 0시 부터(입국 기준) 추후 통보 시 까지

※ 상기 조치사항은 항공고시보(NOTAM)를 통해 전파 예정

3. 이와 관련, 한국항공협회 및 항공사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에 동사항을 전파하여 조치사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 .



수신자 (주)대한항공 국제업무실, 아시아나항공 국제업무팀, 진에어, 에어부산 안전보안실, 제주항공, 티웨이항공 대외협력그룹, 에어서울 주식회사, 한국항공협회장, 항공사운영위원회장, 보건복지부장관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)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외교부장관(경제협정규범과장), 외교부장관(영사서비스과장), 외교부장관(재외국민안전과장), 외교부장관(재외국민보호과장), 외교부장관(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), 법무부장관(코로나19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장), 법무부장관(출입국심사과장), 고용노동부장관(외국인력담당관), 산업통상자원부장관(통상정책총괄과장),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신북방통상총괄과장), 서울지방항공청장(항공운항과장), 부산지방항공청장(항공운항과장), 제주지방항공청장(안전운항과장)

사무관대우 이금아 행정사무관 대결 2020.12.31. 과장 전결
황성필

협조자

시행 국제항공과-11943 (2020.12.31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항공정책실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4220 팩스번호 044-201-5624 / collaa@molit.go.kr / 비공개(2,6)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